

국회의원 이계경

2006년 국정감사 정책질의 자료집-2

우리나라 상품권의 발행·유통 현황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 주요 선진국의 상품권 발행 유통 및 법제도 현황 포함 -
(1999년 2월 상품권법 폐지를 기준 비교)

국무조정실

2006. 10

국회의원 이 계 경
(한나라당/정무위원회)

경품권 상품권만 문제인가?

올 여름은 시원한 ‘바다이야기’가 아닌,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총체적인 국정실패라는 다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도둑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는다며 남의 탓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행성 게임의 심의와 경품용 상품권 발행을 쉽게 해준 정부의 무능, 무책임에서부터 온갖 불법과 비리의 개입을 막지 못한 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국정 실패입니다.

‘바다이야기’는 급기야 전국 1만5000개 게임장에서 유통중인 7000억여원의 경품용 상품권뿐만 아니라 이보다 시장규모가 큰 일반 문화상품권까지 국민적 불신만 키웠습니다.

‘바다이야기’ 사태로 정부가 경품용 상품권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대형서점, 극장 등 문화상품권을 받던 주요 가맹점들이 발행업체 부도 위험을 이유로 사용제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책실패’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참여정부는 ‘바다이야기’가 전국을 도박판으로 만들 것이라는 간단한 예측도 못한 처지에 “상품권 대란은 없을 것”이라며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유통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오던 「상품권법」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99년 2월 폐지된 이래 현재 상품권을 규율하는 제도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 「상품권 표준약관」 및 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여 소비자 보호측면의 효력이 미흡합니다.

물론, ‘99년 2월 상품권법의 폐지 이후 업종을 불문하고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상품

권이 사용됨에 따라 현재 약 3,000여 종의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지만 상품권법의 폐지로 상품권 발행사의 난립과 상품권의 남발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전통적'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04년 말 459건에서 '05년 말 723건으로 크게 증가한데 반하여 구제건수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둘째, 상품권의 불법 유통에 의한 탈세 및 금융사기 등 신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맹점(물품용역판매)계약과 별도로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의 여전법 시행규칙 제2조가 마련되었지만, 동 법안의 사문화로 상품권의 유통시장은 탈세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품권 매입 이후 3 - 6개월 뒤 다시 상품권을 가져오면 연 75%~9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유치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23곳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상품권 관련 법제도의 법적 구속력이 미흡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상품권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표준약관」 및 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에 가깝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측면의 효력이 미비합니다.

넷째, 불법환전 및 사행산업의 확장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바다이야기'에서 보듯이 정부가 상품권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만든 경품고시기준은 결국 문화산업 활성화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초래했습니다.

다섯째, 상품권에 대한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이 어렵습니다.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에 관한 정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 이후 상품권의 종류가 기존의 종이식 상품권에서 카드식, 전자식, 이메일, 모바일 상품권 등 신종 상품권이 등장함에 따라 동 상품권들이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일괄된 법 집행이 어렵습니다.

여섯째, 분쟁 예방 및 해결수단이 미흡합니다. 현행 상품권 관련 법 모두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반하여 당사자 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거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적 강제력을 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 미흡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상품권의 순기능적 역할을 유지하고 상품권 남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법제도의 근본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과정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보호 측면을 보완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폐지된 구 상품권법에 준하는 근거법의 제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질의 자료는 본 의원이 지난 6월 국회도서관내 입법전자정보실에 의뢰하여 임동춘 입법정보분석관의 노력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위한 정책질의 자료를 지원하는 지원조직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10월

국회의원 이계정

목 차

I. 국내 상품권의 현황	1
가. 상품권의 정의 및 종류	1
나. 국내 상품권의 연혁	3
다.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현황	4
II. 주요 선진국의 상품권 관련 발행 및 법제도 현황	6
가. 일 본	6
나. 독 일	8
III. 상품권 관련 현행 법제와 문제점	9
가. 상품권 관련 현행 법제	9
나. 현행 법제의 문제점	11
IV. 상품권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18
가. 단기적 개선방안	18
나. 중장기적 개선방안	19
<첨부 1> 상품권 표준약관 (1999.9.21)	21
<첨부 2> 일본의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3
<첨부 3> 구 『상품권법』	51
참고문헌	64

I. 국내 상품권의 현황

가. 상품권의 정의 및 종류

1) 상품권의 정의

- **상품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¹⁾이라고 법적으로 정의함

2) 상품권의 종류

- 상품권의 종류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지만, **현행 상품권표준약관에 의하면**
 - ①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의미하는 **“금액상품권”**
 - ②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인 **“물품상품권”**
 - ③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인 **“용역상품권”**의 3종류가 있음 (동약관 제2조)

- **발행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 ① 상품권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인 **“자기발행형 상품권”**
 - ②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가맹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인 **“제3자발행형 상품권”**이 있으며 (1994년 개정상품권법 제2조 제2호, 제3호), 이들의 중간형태로
 - ③ 공동발행자로부터 복수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동발행형 상품권”**이 있음

1)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

- 그리고 **용도를 기준**으로 하면
 - ① 특정 기업의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에만 이용할 수 있는 “**특정상품권**”
 - ② 다수의 기업의 다양한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상품권**”(**불특정상품권**)이 있음
 - ① 의 상품권에는 특정 상품(또는 용역)의 일정분량에 대한 급부청구권이 표창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의 물품상품권(또는 용역상품권)과 같으며
 - ② 의 경우는 인도상품을 특정하지 않고 금액으로써 인도할 상품의 상한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액상품권과 동일함

- 공식적인 구분은 아니지만, **문화상품권을 발행업체 입장에서 구분**하면 ‘경품용’과 ‘일반반용’ 문화상품권²⁾으로 나뉨

〈표 1〉 상품권의 분류 및 응용 예

발행형태	발행주체	결재방식	응용예
금액표시 상품권	자기 발행형	전자·전기적 방법에 의한 결재 상품권	정액 전철승차권 고속도로 통행카드
		기타 방법에 의한 결재	구두티켓 / 백화점 상품권 / 구내식당 이용권
	제3자 발행형	전자·전기적 방법에 의한 결재 상품권	일반사업자 발행 디지털상품권 신용카드업자 발행 기프트상품권
		기타 방법에 의한 결재	도서상품권 / 지역상품권
물품표시 상품권	자기 발행형	전자·전기적 방법과 기타 방법에 의한 결재 상품권	농수산물, 광물 등
	제3자 발행형	전자·전기적 방법과 기타 방법에 의한 결재 상품권	
용역표시 상품권	자기 발행형	전자·전기적 방법에 의한 결재 상품권	공중전화카드 등
		기타 방법에 의한 결재	사우나표 / 수영장이용권 / 학원수강증
	제3자 발행형	전자·전기적 방법과 기타 방법에 의한 결재 상품권	-

자료: 권형택(2006)

2) 문화상품권이 두 종류로 구분된 것은 2004년 말 문화관광부가 문화상품권 유통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상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를 발표했기 때문. 경품용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려면 소비자→가맹점→상품권발행사 과정을 통해 회수돼야 하지만 게임업소 또는 성인 오락실의 불법 재사용으로 회수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것이 현실임

- ① **경품용**은 성인 오락실 등 게임업소가 손님에게 당첨 대가로 주는 상품권으로 도서 구입은 물론, 영화관람, 물품구입 등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환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서울보증보험 보증 및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지정 등의 절차가 필요
- ② 반면에 **일반용**은 게임업소를 제외한 다른 영업장에서 유통 중인 기존 상품권처럼 업계 자율로 발행·유통할 수 있음

나. 국내 상품권의 연혁

- '94년 1월, 상품권의 전면 허용 이후 **상품권시장**은 '97년 기준으로 2백개 회사에서 1조6천억원 규모가 발행될 만큼 활성화되었지만, 상품권의 발행과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품권 유통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던 **상품권법은 '99.2.5일 폐지됨**³⁾
 - 동 법이 폐지된 이유는 경제·행정 규제의 정비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⁴⁾하는 데 있었지만, 동 법의 폐지 이후 상품권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소비자 피해의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 국내 상품권 관련 연혁

- 1961년 12월 **최초의 「상품권법」 제정**
- 1971년 12월 정부, 경기부양 목적으로 상품권 발행업소 8개 지정
- 1973년 동법을 개정, 상품권 발행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 - 상품권 발행 활발
- 1974년 8월 물품표시상품권 발행금지 및 금액표시 상품권의 발행한도액 2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 조정
- 1975년 12월 **상품권 발행의 전면 금지** (이유 : 과소비 조장 및 부조리 수단)
- 1988년 10월 상품권 발행 재검토 - 물가안정과 과소비문제 및 중소기업체에 대한 피해문제 제기 무산
- 1990년 10월 도서상품권·양곡상품권 등 일부 발행 허용
- 1993년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7월) 및 개정안 국회통과(12월)

3) 당시 상품권법은 상품권의 할인판매, 재판매를 금지하고, 공탁금 예치(분기말 미상환 잔액의 50%)를 의무화하여 발행자의 경영활동과 자금 운용을 제약

4) 당시 정부 입장은 상품권 발행이 발행자와 소비자간 쌍무계약에 불과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분쟁은 기존의 소비자 보호제도 및 민사상 구제제도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었음

- 1994년 1월 **상품권 발행 전면 허용**
- 1999년 2월 **상품권법의 폐지법(법률 제5749호)에 따라 전면 자유화**
- 2000년 3조5천억원 규모로 성장 - 발행 자유화로 유통의 활성화
- 2002년 2월 **경품취급기준고시 발표**, 경품 제공대상에 도서·문화상품권 포함
- 2002년 11월 백화점 상품권의 카드 매입허용 (여신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
- 2004년 12월 경품취급기준고시 개정, 문화관광 관련 상품권인증제도 시행안 발표
- 2005년 3월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도 도입 및 취소⁵⁾
- 2005년 8월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실시**

다.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현황

- 화폐, 수표, 신용카드에 이어 제4의 대금결제 수단으로 정착한 **상품권의 시장규모는 현재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그 이유는 '99년 2월 상품권법의 폐지 이후 불법 유통물량이 너무나 많고, 현행 법체계에서는 상품권에 대한 발행규제가 없어서 총량을 집계할 수 없기 때문
 - 상품권은 '98년말 기준으로 2백개 회사에서 **1조5천891억원 규모가 발행될 만큼 활성화되었고**, 주로 제화·백화점·유류업이 전체 발행액의 80%를 차지
- 상품권법 폐지 이후 발행이 자유화된 **상품권은 현재 약 3,000여종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중 **백화점, 제화·패션, 주유상품권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 2004년 이후 언론의 시장규모 추정자료는 경품용 상품권의 포함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품권 시장은 **2000년 3조원 규모에서, 2001년 4조5천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2002년도 5조5천억~6조원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었음**⁶⁾
 - **2004년 재정부 국정감사자료**⁷⁾에 따르면 **2003년 전체 상품권 시장규모는 약 2억1천865만장, 금액으로는 6조6천717억원으로 추정**
 - 종류별로는 **백화점 및 유통업체 3조1천560억원으로 전체 상품권 시장의 49.7%**

5) 상품권이 스크린경마게임 등 성인오락실의 경품으로 사용됨으로써 상품권 난립과 환전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문화관광부는 게임장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 12월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고시'를 공포하고 게임용 상품권 인가제를 도입, 2005년 3월말 모두 22개 업체를 선정했음. 그러나 가맹점자료 등 허위서류 제출 등이 확인돼 전 상품권에 대해 선정을 취소하였으며, 문광부는 대신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2005.10월 현재 모두 9종의 경품용 상품권을 확정하였음

6) 매일경제 (2002.2.7), "6조원 상품권시장"(필자 주: 경품용 상품권 제외 추정)

7) 김정부의원,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2004

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큰 점유율 차지

– 두 번째로 제화사 1조9천060억원, 정유사 6천970억원, 기타 9천127억원 등 발행

□ 재정경제부⁸⁾에 따르면 **2005년의 시장규모를 21조5천억원으로 추산함**

- 자가발행형 상품권 시장 발행매수는 2억1천865만장, 금액으로 환산하면 6조6천717억원에 달하며, 외식, 교육, 도서, 문화 관광 상품권 등 제3자 발행형 상품권 시장은 14조8천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2005년의 시장규모를 **8조원(경품용 상품권 제외)으로 추산한 보도⁹⁾도 있음**

8) 매일경제 (2005.7.28) “상품권 유통 시장”(필자 주: 경품용 상품권 포함 추정)

9) 조선일보 (2006.6.30)는 상품권 인터넷유통업체인 티켓나라의 자료를 인용 8조원으로 추정

II. 주요 선진국의 상품권 관련 발행 및 법제도 현황

- 외국의 경우 결제방식 및 문화의 차이로 상품권이 이용되는 일이 많지 않으며, 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화로 인하여 상품권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국가임
 - 지난 '99년에 폐지된 우리나라의 상품권법(이하“구 상품권법”)의 경우 입법시 일본의 상품권취체법¹⁰⁾을 모델로 하였음
 - 일본 이외에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아주 적게 이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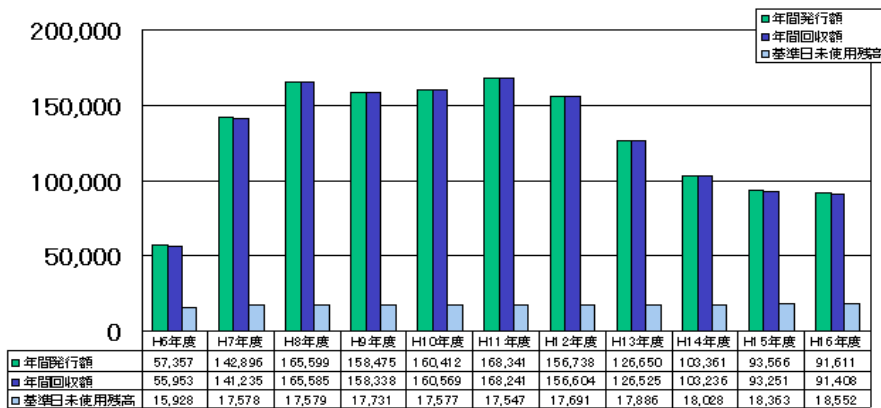
가. 일본

1) 상품권의 발행 현황

- 일본의 전불식 증표의 연간 발행액은 1999년 16.8조엔으로 정점을 달한 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4년말 현재 9조엔에 이릅니다**
 - 동 발행액은 상품권은 물론 선물(Gift)권, 선불(Pre-paid) 카드, 쿠폰권 등을 포함

〈표 2〉 전불식 증표 발행액 등의 추이¹¹⁾

(단위: 억엔)



* 자료: 일본 금융청 ** 연간발행액, 연간회수액, 기준일 미사용 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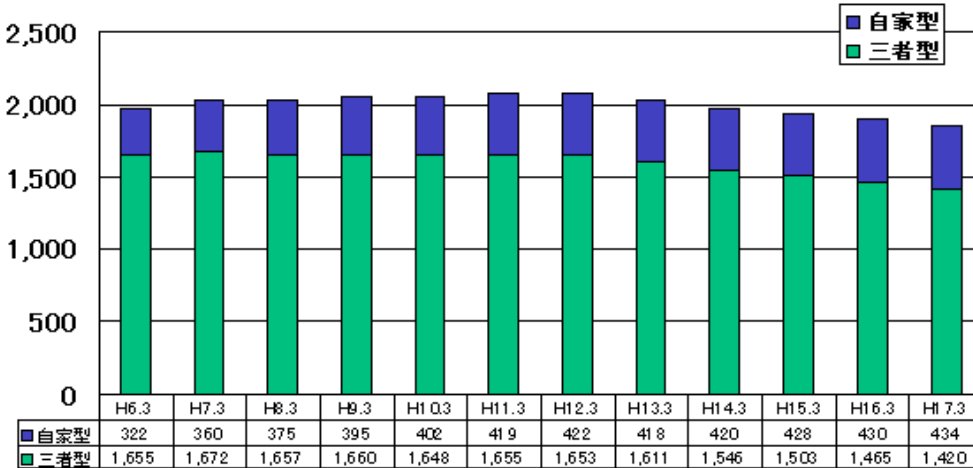
* H12=2000년, H14=2002년, H16=2004년

10) 1932년에 제정된 일본의 상품권 관련 법으로 1989년에 제정된 「전불식증표 등에 관한 법률」의 전신

11) <http://www.maesho.or.jp/framepage2.htm>

- 전불식 증표의 연간 발행자 수는 **2005년 3월말 현재 1,854개** (자가형이 434, 3자형이 1420)에 달함. 발행자 수 또한 '98년을 기점으로 약한 감소 추세에 있음

〈표 3〉 전불식 증표 발행자의 추이



* 자료: 일본 금융청

2) 상품권 관련 법제 현황

- 일본의 경우 상품권을 규제하는 법률은 '89년 제정된·전불식증표(前拂式證票)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¹²⁾'이 있으며, 동 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전불식증표발행협회'에서 제정·운영하는 상품권 유형별 「표준약관」이 있음
 - 동 법은 '32년에 제정된 종래 종이식 상품권을 위주로 한 상품권취체법(商品券取締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한 것으로 상품권은 물론 선물(Gift)권, 선불(Pre-paid) 카드, 쿠폰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전불식증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동시에 규제
 - 주요 내용은 전불식 증표의 정의와 적용범위, 자가(自家)발행형 전불식 증표 발행의 신고 및 지위 승계, 제3자(第三者)형 발행자의 등록 및 지위 승계, 표시 사항 및 발행보증금의 공탁¹³⁾, 상품권 소유자 보호¹⁴⁾, 명의 대여 금지, 전불식증표발행협회, 감독 및 벌칙 등이며, 특히 표시사항에는 사용시설·장소의 범위, 이용상 필요한 주의 사항, 이용약관설명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의 취지 등이 규정됨

12) 동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2> 참조. 일본은 상품권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법률을 개정해 왔기 때문에 동 법률은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글 번역판과 일어판 모두를 첨부함

13) 자가형 발행자는 사후신고(미사용 잔고 700만엔 이하 신고 면제), 제3자형은 사전등록하고, 반기(半期)마다 미사용 잔고가 1,000만엔 초과시 1/2 이상 공탁 또는 보전계약

14) 발행자의 파산 등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품권 등에 대해서는 발행자등이 공탁한 발행보증금으로 액면금액의 일부를 환불

- 협회가 운영하는 상품권 유형별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자가발행형/제3자발행형, 금액형)에는 약관의 취지, 상품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상품권의 재교부 관련 사항, 가맹점과의 관계(제3자 발행형의 경우), 환금의 원칙금지 등을 규정

나. 독일

- **(발행현황)** 독일에서 **한국의 상품권과 유사한 것은“Gutschein”(인환권)**으로서, 사적 고객 (Privatekunden)과의 **상거래과정에서 종종 현금대신에 지불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발행현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 매우 적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통 Gutschein은 상인들에 의해서 선물교환권으로서 발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특정한 날(예: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에 또 하나의 선물로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음
 - Gutschein은 물품·용역의 제공을 표시하고 기록한 증서로, 법적으로는 유가증권 또는 증거증권으로 이해되고 있음
- **(법제현황)** Gutschein의 법적 성격은 **독일민법 제807조에서 규정한 완전유가증권**으로서, **일본과 다르게 독립된 법률이 없음**
 - Gutschein의 형태는 다양하고 법적근거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법적근거를 찾기는 어렵고, 법적 개념도 아직까지 정의되고 있지 않아서 다양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Gutschein의 전액 현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Gutschein에 기재된 가치의 물품·용역을 완전히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나머지를 현금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다만 잔액만큼의 새로운 Gutschein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임. 단, 발행인의 의사로서 현금을 지불하는 것은 가능함
 - Gutschein의 사용기한¹⁵⁾은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고, 소멸시효기간은 발행연도 12월 31일부터 계산됨

15) 상품권의 사용기한과 관련하여 2004년 한 독일 법원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권제도를 운영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음. 독일의 유통업체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권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너무 짧게 지정된 상품권의 사용기한(유효기간이 10개월)은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유효기한이 짧게 제시된 경우 기한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판결함 (자료: <http://www.vz-nrw.de>)

Ⅲ. 상품권 관련 현행 법제와 문제점

가. 상품권 관련 현행 법제

-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한다는 취지에서 '99년 2월 『상품권법』이 폐지¹⁶⁾된 이래, 현재 상품권을 규율하는 제도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 『상품권 표준약관』 및 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등이 있음

1)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3-8호)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근거하여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으로서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핵심적인 중요정보는 반드시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
- 동 조항에 근거 2003년 12월 공정위가 고시한 상품권 분야의 주요정보 항목은 ① 권면금액 중 사용후의 잔액에 대한 환불 기준¹⁷⁾, ②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등임
 - 공정위의 표시 광고 기본원칙은 사업자의 중요정보 항목에 대한 알 권리가 있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광고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2) 『상품권 표준약관』

- 상품권 표준약관은 상품권법 폐지에 따라 상품권 이용자들이 상품권 발행자나 가맹점과의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 단체가 심사 청구한 상품권 표준약관을 심사하여 '99년 9월 21일부터 보급**
 - 주요 내용은 사용 가맹점 및 사용 가능시기, 상품권 훼손시 발행자의 재발급 및 책임한도, 유효기한, 상품권의 잔액환불 요건, 상품권 권리자에 대한 지급보증 유무에 관한 사항의 권면예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임

16) 구 상품권법상 규제내용의 재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사무처 법제실(2004) 참조

17) 상품권에 표시할 내용으로서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상품권 표준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¹⁸⁾**
 - **제3조 상품권 사용제한 금지** : 소비자는 가격 할인 기간, 할인 매장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그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상품권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 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함
 - **제6조 상품권의 유효 기간** : 상사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 내(발행일로부터)에 사용할 수 있음
 - **제7조 상품권의 잔액 반환 규정** : 원칙적으로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단, 상품권면 금액(상품권 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총 합계액)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 받고 소비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 **제8조 상품권 지급 보증** : 상품권 지급 보증이란 발행자가 금융 기관과 지급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상품권 발행 금액의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행 사업자가 파산할 때 상품권 소지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상품권에 대한 지급보증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돼 있음. 단, 지급 보증 여부에 대한 사항을 상품권에 기재토록 해 소비자가 상품권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음

3) 『소비자피해보상규정』¹⁹⁾(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8호)

-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상의 ‘**상품권 관련업**’에서는 **상품권의 상환거부 및 금액상품권의 잔액환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상품권 피해유형을 총 5가지로 구분, 그에 따른 품목별 보상 기준**은 분쟁 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소비자가 품목별 보상 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됨
- **상품권 피해유형 5가지와 그에 따른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보상기준: 잔액 현금환급)
 - ② 특정상품에 대하여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

18) 『상품권표준약관』의 전체 내용은 <첨부 1> 참조

19) 소비자피해규정 제정은 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시행령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

- 유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보상기준: 당해 상품 제공의무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전액 현금 환급)
- ③ 상품권법령상의 상품권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변경 등의 이유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보상기준: 상환의무 이행)
 - ④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보상기준: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용역의 상환의무 이행)
 - ⑤ 물품상품권 또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현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보상기준: 상환의무 이행)
 - 위의 잔액환급 기준은 상품권의 권면 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100분의 60,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을 사용한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또한 상품권에 대한 보상책임자는 상품권발행자(직영매장 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상품권사용 가맹점 등)로 규정함

나. 현행 법제의 문제점²⁰⁾

- '99년 2월 상품권법의 폐지 이후 **업종을 불문하고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현재 약 3,000여 종의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순기능 역할 수행**
- 그러나, 상품권법의 폐지로 상품권 발행사의 난립 및 상품권의 남발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음
 - 첫째, 상품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제기되는 소비자 보호 차원의 문제점과 둘째, 최근 경품용 상품권의 허용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 등

1) '전통적' 소비자 피해의 지속적 발생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04년 말 459건에서**

20) 구재균(2005)은 '선지급 후구매'를 특색으로 하는 상품권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사용 이외의 법적 문제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전자로서는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잔액의 반환,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의 처리, 상품권의 사용제한 등이며, 후자로서는 상품권 발생자의 진입규제, 지급보증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함

'05년 말 723건으로 크게 증가한데 반하여 구제건수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4> 참조)

- 이러한 통계 추이는 **현행 법제의 개선 필요성을 확실하게 반증하는 것으로** 최근 상품권의 시장규모가 대폭적인 확장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추세 또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표 4> 소비자보호원의 상품권 피해 상담 및 구제 건수 추이

(단위: 건수)

	'98말	'99말	'00말	'01말	'02말	'03말	'04말	'05말	'06.6말
상담건수	502	595	653	437	365	450	459	723	494
구제건수	N.A.*	N.A.	37	29	25	29	40	51	N.A.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선일보(2006.6.30) *N.A.: 관련 데이터 없음

- **상품권 피해 관련 상담건수의 소비자 피해 유형²¹⁾**은 상품권 사용잔액의 현금거절(21.0%), 상품권 사용 제한(10.8%), 상품권의 분실·도난·훼손(10.3%), 및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10.1%) 등의 **4가지 유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

<표 5> 상품권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

불만·피해 유형	빈도(건)	구성비(%)
상품권 사용 잔액의 현금 환급 거절	94	21.1
할인기간·할인매장/특정상품·매장에서의 상품권 사용 제한	48	10.8
상품권의 도난·분실 또는 훼손 관련 문제	46	10.3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45	10.1
인터넷 구입 후 상품권 인도지연·미인도	44	9.9
사업자의 부도·폐업·변경 등으로 사용 거절	41	9.2
상품권 가맹점의 사용 거절/시스템 장애 등	36	8.1
상품권 구입 후 계약해제 요구 거절	31	6.9
추가대금 요구	21	4.7
상품권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13	2.9
기 타	27	6.0
합 계	446	100.0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2004)

21)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간 상품권 관련 피해상담 사례 446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로 한국소비자보호원(2004)에서 인용

2) 불법 유통에 의한 탈세 및 금융사기 등 신종 범죄 증가

- **(상품권의 불법 유통에 의한 탈세)** 2002년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맹점(물품-용역판매) 계약과 별도로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의 여전법 시행규칙 제2조가 마련되었지만, 동 법안의 死文化로 상품권의 유통시장은 탈세의 온상화
 -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상품권 구매행위는 개인에게는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법인에게는 경비처리 대상이 아님
 - 상품권을 판매하는 백화점, 할인마트업체, 제화업체 대다수는 현재 각 신용카드사들과 상품권 가맹 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실정²²⁾
 - 그 이유는 물품 가맹 수수료보다 1~1.5% 만큼 높은 상품권 가맹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기피하는 유통업체와 수수료 수입을 위해 이를 간과해주는 신용카드사의 합작으로 수조원대의 상품권이 변칙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

- **(상품권을 이용, 자금유치한 유사 수신업체 적발)**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품권 매입 후 3~6개월 뒤 다시 상품권을 가져오면 연 75~9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유치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23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²³⁾
 - 예를 들면, 한 유사 수신업체는 5천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투자자에게 일단 상품권 6천500만원어치를 주고 4개월에 걸쳐 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준다고 투자자를 끌어들이었고, 그 대가로 4개월로 치면 30%, 1년으로 계산하면 90%에 이르는 고금리를 제시한 것임
 - '99년 상품권법의 폐지 후 상품권 발행이 자유화되면서 소규모 상품권 발행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상품권을 자금모집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3) 현행 법제의 미흡한 법적 구속력

- 현재 우리나라의 상품권 관련 법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표준약관과 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에 가깝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측면의 효력이 미흡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22) 주간동아(2005.4.12), “복마전 상품권 시장: 쑥쑥 크는 상품권, 줄줄 새는 세금”

23) 매일경제 (2006.7.6), “금감원, '90% 고금리보장' 믿지 마세요”

-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음
- 즉, 표준약관은 고객과(소비자 등) 사업자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지만 모든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성이나 법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표준약관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표준약관의 강제 적용이나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거래에서는 상품권 표준약관의 내용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품목별 보상 기준은 분쟁 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고 피해 소비자가 품목별 보상 기준에 따른 피해 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 보상의 기준이 됨. 또한 상품권과 관련한 모든 피해 유형을 규정했다고 볼 수도 없고, 보상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된 상태임.

4) 불법 환전 및 사행산업의 확장 등 사회적 문제 24)

- 최근 게임업소 등 사행산업의 급속한 확장은 동 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야기됨
 - **2003년부터 신규 게임업소의 개업이 지자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됨**으로써 현재 성인 게임업소의 수는 1만4천여개로 사행산업의 급격한 확장 현상 발생
 - **게임업소에 2002년 2월 문광부의 경품고시기준에 의해 경품용 상품권이 최초 도입**되었으며, 도서·문화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등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품 취득 후 문화산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문화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생겨났음
- 정부의 이 같은 규제완화 조치로 현금을 이용할 수 없는 사행성 산업에 현금과 마찬가지로 역할²⁵⁾을 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 발행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결국 게임업소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함
 - **문광부가 2005년 8월부터 시행된 상품권 지정제**를 통해 지정한 상당수 상품권은 상품권으로서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게임을 위한 불법 환전용 등 사행행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²⁶⁾으로 드러남

24) 경품용 상품권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박형준의원실(2005) 참조

25) 예를 들면 1만원권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해서 경품에 당첨되는 상징물이 나오면 현금에 상응하는 5천원권이나 1만원권 상품권이 게임기에서 배출되고, 이것은 다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돼 결국 **상품권이 도박장의 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됨

- 2005년말 현재 한달 평균 성인게임장용 상품권 발행액은 1조4천억원에 달해 강원랜드 1년 매출액인 7천억원의 2배에 달하는 실정
- 정부의 상품권 관련 규제완화와 경품고시기준은 결국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²⁷⁾

5)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의 어려움²⁸⁾

-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에 관한 정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재정경제부령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제2조 및 재정경제부고시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전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상품권 구매금액을 제한하기 위하여, 후자는 상품권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각 동일한 내용의 상품권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²⁹⁾
- 정보화 사회의 대두로 인하여 상품권의 종류가 기존의 종이식 상품권에서 카드식, 전자식, 이메일, 모바일 상품권 등 신종의 상품권이 등장함에 따라 동 상품권들이 상품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
 - 특히 카드형 상품권(전자나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와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각각 분리하여 별개의 규범(상품권 관련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제간 일관성 결여 및 법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
 - 향후 상품권 시장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법률차원의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시급한 과제

26) 동 상품권을 ‘딱지상품권’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칩과 같은 환전도구로 사용되는 상품권을 지칭함. 환전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맹점이 없고 외부 유통이 불가능함. 정상적인 상품권이 5천원에 유통되는 반면, 딱지상품권은 경품게임장을 대상으로 30~40원 정도의 헐값에 거래됨. 이 딱지상품권은 대부분 게임장 내부 또는 인근에 설치된 환전소에서 10% 정도의 금액을 수수료로 떼고 환전이 가능함

27) 주간동아 (2005), “복마전 상품권시장”

28) 본고의 5)와 6)항은 국회사무처 법제실(2004)에서 인용

29)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표시·광고사향고시』에는 상품권에 대한 정의규정조차 없음

6) 분쟁 예방 및 해결수단의 미흡

- 상품권 관련법을 계약의 성립시기 기준으로 구분하면, **표시광고법 및 약관규제법은 계약 성립 전에 주로 관련되고, 소비자보호법은 계약 성립 후에 주로 관련**
 - 즉, 앞의 두 법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여 분쟁을 사전 예방하려는 것이고, 뒤의 법은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상품권 관련법 모두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반하여 당사자 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거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적 강제력을 발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사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분쟁의 사전예방 관련

- **표시광고법과 약관규제법**은 상품권 발행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계약 시에 계약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품권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표시광고법은 중요사항의 표시·광고를,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명시·설명을 각각 강제함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각각의 경우 상품권 발행자가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계약내용에 관한 규제는 없음**
- **표시광고법에 의한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는 단지 잔액환불기준과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따라 표시되는 환불기준 또는 보상기준은 발행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정해져도 달리 규제할 방법은 없음
 - 한편, 동 기준에는 분쟁예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정보인 상품권의 지급보증여부 또는 도난, 분실, 훼손시 보상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상품권 발행자가 지급보증여부를 상품권면에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난, 분실, 훼손의 경우에도 발행자의 면책조항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 대한 보상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약관규제법에 의한 「상품권표준약관」**은 상품권 관련 계약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상품권 발행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으로서 일반화될 경우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문제는 표준약관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내용으로 채택 되었을 때에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상품권 발행자들이 표준약관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심지어 별도의 약관을 두지 않고 상품권면의 기재내용만을 계약내용으로 삼는 경우도 있음
- 물론 계약내용이 약관규제법상의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무효로 되거나 감독당국으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일 뿐임

- 이러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으로 상품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해결은 사후적 구제수단에 의존하고 있지만,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계약내용은 법제화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분쟁의 사후해결 관련

-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사후적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분쟁 당사자간의 보상방법에 관하여 동 기준과 다른 의사표시가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동 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정하고 있는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80이라는 잔액환급 비율에 대해서 상품권이 계약당사자인 구매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잔액의 환급요건에 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함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함

IV. 상품권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첫째, 단기적 방안으로 현행 법제도의 근본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
 - 구 상품권법의 폐지로 제고된 시장의 자율성 등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보호 측면의 보완을 도모하려는 접근방식
- 둘째, 중장기적 방안으로 폐지된 구 상품권법에 준하는 근거법의 제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 구 상품권법의 폐지 이후 야기된 제반 문제점 및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 선불카드 등 선불형 지급 수단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접근방식

가. 단기적 개선방안

- 소액 상품권 발행의 남발 억제 및 현황 파악을 위해 1만원 이하 소액 상품권 인지세 비과세 혜택 폐지 등의 규제가 필요³⁰⁾
 - 즉, 상품권 권면 금액별로 차등 인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개별 기업들이 부담하는 인지세액은 동일하게 운용
 - 현행 세법상 1만원 초과분 상품권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어 특히 게임업소 등에서 사용되는 경품용 상품권의 경우 소액 상품권 발행이 남발되고 있는 문제점의 해소 및 발행시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주목적
- 상품권의 신용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상품권 발행자의 진입을 규제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사후적으로 상품권 발행자의 파산 등에 대비하여 사적 보험이나 공제 제도를 운용
 - 사전적 방안은 상품권 발행자의 진입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발행 인가제 또는 등록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30) 한나라당 김정부의원실은 2004년 10월 발의를 통해 동 방안을 추진했으나 1만원 초과분의 상품권에 대한 차등과세로 수정 결의되었고, 1만원 이하의 상품권에 대한 비과세 안은 삭제됨. 또한 김정부의원실은 2004년 재경부 국정감사시에 현황파악을 위해 “인쇄소 관리에 대한 국세청의 고시사항도 변경해 상품권의 인쇄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토록 규정하면서, 상품권 수입수량, 출고 수량 등을 명시한 인쇄종료 보고서를 관할세무서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의한 바 있음

- 관한 법률에서 방문판매업자나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사후적 방안은 발행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구 상품권법의 공탁제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음. 이에 사적 보험이나 공제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이나 금융기관에 의한 보증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지급보증여부 및 분실, 도난, 훼손시의 보상기준 등 분쟁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에 포함하는 등의 개정**
- 즉, ① 상품권 발행업자의 부도·폐업·변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상품권 지급보증여부를 상품권면에 반드시 표시하고, ② 분실, 도난, 훼손시의 보상기준을 상품권면에 표시하고, ③ 사용잔액 현금환급 거절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품권 권면에 상품권 발행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의 표시를 추가하도록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상의 표시사항 추가 검토
 - 동 고시는 자율규제에 가까운 현행제도 중에서 비교적 강제력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분쟁 원인 제공사항 등을 표시·광고사항에 포함시킬 경우 관련 분쟁의 상당한 감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 **약관규제법의 개정을 통해 『상품권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상품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거래조건이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불리한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하는 방안**

나. 중장기적 개선방안

- (1안) **현행 상품권 표준약관 규정을 대폭 보완하여 이를 (가칭)상품권법으로 격상시켜 단일 법률을 다시 제정³¹⁾**
- 선지급 후구매를 특색으로 하는 상품권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법적 규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규 법률에는 ‘**상품권발행신고제**’(자기 발행형 상품권의 경우)와 ‘**등록제**’(제3자 발행형 상품권의 경우)를 도입하고, 상품권 발행자의 파산 등에 대비하여 보험제도를 도입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의한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상품권 발행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여야 함

31) 구재균(2005)의 결론

□ (2안) 상품권 관련 다양한 니드(needs)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품권에 관한 근거법을 다시 제정하는 것이 필요³²⁾

○ 다양한 니드에는

- ① 선불카드 및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포괄할 수 있는 상품권에 관한 개념정의 필요,
- ② 구 상품권법에서 상품권 관련 법률관계 중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내용은 법률로 규정할 필요,
- ③ 특히 소비자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잔액환급기준의 경우 상품권 발행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규정 할 필요,
- ④ 국내 상품권 시장현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관련정책 입안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 요구권 정도는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또한, 상품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 ① 상품권면의 의무적 기재사항,
- ② 상품권의 최단 유효기간의 제한,
- ③ 지급보증제도,
- ④ 잔액환급기준,
- ⑤ 제3자발행형 상품권 발행자의 인가요건,
- ⑥ 정부의 자료요구권 등이 될 수 있음

32) 국회사무처 법제실(2004)의 “근본적 방안”

〈첨부 1〉

상품권 표준약관 (1999.9.2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이하 발행자 라 함)이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 이라 함)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다음과 같다.

1. 금액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 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2. 물품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3. 용역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 하나 또는 두가지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만 기재함

제3조(상품권의 사용) ①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②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

제4조(물품·용역·상품권의 사용) ①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②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는 물품 등의 경우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 및 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이상이어야 한다.

③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수량으로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상품권의 훼손) ①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②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저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내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②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8조(지급보증) 상품권의 지급보증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 지급보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하는 자와 지급보증의 내용을 기재하며, 지급보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보증되어 있지 않음을 반드시 명시

제9조(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10조(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첨부 2〉

일본의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³³⁾

〈한글 번역판〉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전불식 증표의 발행자에 대해서 등록, 그 외의 필요한 규제를 실시하고 그 발행 등의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전불식 증표의 구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전불식 증표와 관련되는 신용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 있어서 ‘전불식 증표’란, 다음에 기재하는 증표 그 외의 물건(승차권, 입장권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것 및 그 발행의 날로부터 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① 증표 그 외의 물건(이하 이 항에 대해 ‘증표 등’이라고 한다.)에 기재되어 또는 電磁的 방법(電子的 방법, 자기적 방법 그 외의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대해 같다.)에 의해 기록되고 있는 금액(금액을 정도 그 외의 단위에 의해 환산해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당 단위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 대해 같다.)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 발행되는 증표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증표 등에 기록되는 금액에 응하는 대가를 얻어 해당 금액의 기록의 가산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증표 등의 발행자 또는 해당 발행자가 지정하는 사람(다음호에 대해 ‘발행자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물품을 구입, 혹은 빌리고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이러한 대가의 변제를 위해서 제시, 교부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것.
- ② 증표 등에 기재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기록되어 있는 물품 또는 역무의 수량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 발행되는 증표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증표 등에 기록되는 물품 또는 역무의 수량에 응하는 대가를 얻어 해당 수량의 기록의 가산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발행자 등에 대해서 제시, 교부 그 외의 방법에 의해 해당 물품의 급부 또는 해당 역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

33) 출처: <http://www.houko.com/00/01/H01/092.HTM>

- 2 이 법률에 있어서 ‘기준일 미사용 잔고’란, 전불식 증표의 발행자가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이하 이러한 날을 ‘기준일’이라고 한다.)까지 발행한 모든 전불식 증표의 해당 기준일에 있어서의 미사용 잔고(다음의 각 호에 기재하는 전불식 증표의 구분에 상응해 해당 각 호에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으로 해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산출한 액을 말한다.
 - ① 전항 제1호의 전불식 증표
해당 기준일에 대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
 - ② 전항 제2호의 전불식 증표
해당 기준일에 급부 또는 提供을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역무의 수량을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 3 이 법률에 있어서 ‘증표 금액 등’이란, 제1항 제1호의 전불식 증표에 있어서는 그 발행시에 있어 대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고 동항 제2호의 전불식 증표에 있어서는 그 발행시에 있어 급부 또는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역무의 수량을 말한다.

- 4 이 법률에 있어서 ‘자가 발행형 전불식 증표’란, 전불식 증표의 발행자(해당 발행자와 정령으로 정하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대해 같다.)로부터 물품을 구입, 혹은 빌리거나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한정하고 이러한 대가의 변제를 위해서 제시, 교부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 전불식 증표 및 발행자 에 대해서만, 제시, 교부 그 외의 방법에 의해, 물품의 급부 또는 역무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전불식 증표를 말한다.

- 5 이 법률에 있어서 ‘제삼자 발행형 전불식 증표’란, 자가 발행형 전불식 증표 이외의 전불식 증표를 말한다.

- 6 이 법률에 있어서 ‘자가형 발행자’란, 자가 발행형 전불식 증표만의 발행자(그 발행자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사람 및 그 발행자의 일반 승계인을 포함하고 그 발행한 자가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기준일 미사용 잔고가 있는 것에 한정한다.)인 법인(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이하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이라고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을 말한다.

- 7 이 법률에 있어서 ‘제삼자형 발행자’란, 제6조의 등록을 받아 제삼자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의 업무를 실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8 이 법률에 있어서 ‘기준 기간’이란, 기준일의 다음날부터 다음의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적용 제외)

제3조 이 법률은 다음에 기재하는 전불식 증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다음호에서 ‘나라 등’이라고 한다.)가 발행하는 전불식 증표.
- ②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특별한 법률에 의해 특별한 설립 행위를 가지고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지방공공단체가 설립자가 되어 설립된 법인(이러한 법인 가운데 그 자본금 또는 출자액의 전부가 국가 등으로부터의 출자에 의하는 것. 그 외의 나라 등에 준하는 법인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이 발행하는 전불식 증표.
- ③ 오로지 발행자의 종업원에 대해서 발행되는 자가 발행형 전불식 증표(오로지 해당 종업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 그 외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전불식 증표.
- ④ 할부 판매법(소화 36년 법률 제159호) 그 외의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선불금의 보전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진 거래에 관련되는 전불식 증표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 ⑤ 그 사용자를 위해서 상행위가 되는 거래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 전불식 증표.

제2장 자가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의 신고 등

(자가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의 신고)

제4조 자가형 발행자는 기준일에 그 발행한 자가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기준일 미사용 잔고가 그 발행을 개시하고 나서 최초로 정령으로 정하는 액(제13조 제1항 및 제16조에 있어서 ‘신고 기준액’이라고 한다.)을 넘게 되었을 때는 해당 기준일의 다음날부터 2월을 경과하는 날(제12조에 대해 ‘신고 기한’이라고 한다.)까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을 내각총리대신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가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을 폐지한 후 다시 그 발행을 개시했을 때도 같다.

- ① 이름,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인격이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이름.
- ② 발행하는 自家発行型 전불식 증표의 증표금액 등의 종류.
- ③ 해당 기준일에 있어서의 기준일미사용 잔고.
- ④ 그 외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전항의 신고를 한 자가형 발행자(다음 조 및 제16조에 대해 ‘신고 자가형 발행자’라고 한

다.)는 동항 각 호에 기재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자가형 발행자의 지위의 승계등)

제5조 신고 자가형 발행자가 자가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과 관련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했을 때, 또는 신고 자가형 발행자에 대해 합병, 회사 분할(해당 自家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과 관련되는 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에 한정한다.) 혹은 상속이 있을 때는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사람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혹은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회사 분할에 의해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 혹은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그 협의에 의해 해당 自家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과 관련되는 사업을 승계해야 할 상속인을 정했을 때는 그 사람. 이하 같다.)은 그 신고 자가형 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자가형 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3 신고 자가형 발행자는 자가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을 폐지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4 신고 자가형 발행자인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에 의해 해산했을 때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 수속 개시의 결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파산 관재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5 신고 자가형 발행자인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이 소멸했을 때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었던 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장 제삼자형 발행자의 등록

(등록)

제6조 제삼자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의 업무는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법인이 아니면, 행해서는 안 된다.

(등록의 신청)

제7조 전조의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 신청서를 내각총리대신에 제출해야 한다.

- ①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 ② 자본금 또는 출자의 액
- ③ 임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 ④ 발행하는 전불식 증표의 증표 금액등의 종류
- ⑤ 그 외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전항의 등록 신청서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서약하는 서면 그 외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등록의 실시)

제8조 내각총리대신은 제6조의 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는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을 제삼자형 발행자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 ① 전조 제1항 각 호에 기재하는 사항.
- ② 등록 연월일 및 등록 번호.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등록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제삼자형 발행자 등록부를 공중이 마음대로 구경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내각총리대신은 등록 신청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할 때, 또는 등록 신청서 혹은 그 첨부 서류 가운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혹은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빠져 있을 때는 그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 ① 법인이 아닌 자.
- ② 다른 제삼자형 발행자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상호 혹은 명칭과 동일한 상호 혹은 명칭 또는 다른 제삼자형 발행자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상호 혹은 명칭을 이용하려고 하는 법인.
- ③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6조의 등록이 취소되고 그 취소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법인.
- ④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벌금의 형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을 끝마치거나 또는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⑤ 임원 가운데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다.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을 끝마치거나 또는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라.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벌금의 형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을 끝마치거나 또는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마. 제삼자형 발행자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6조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취소의 날 전 30일 이내에 해당 제삼자형 발행자의 임원인 사람으로 해당 취소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⑥ 제삼자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의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산적 기초를 가지지 않은 법인.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거부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나타내고, 그 취지를 등록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삼자형 발행자의 지위의 승계 등)

제10조 제삼자형 발행자가 제삼자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과 관련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했을 때, 또는 제삼자형 발행자에 대해 합병 혹은 회사 분할(해당 제삼자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과 관련되는 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에 한정한다.)이 있을 때는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혹은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혹은 회사 분할에 의해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은 그 제삼자형 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혹은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혹은 회사 분할에 의해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이 전조 제1항 제2호로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할 때는 이렇지 않다.

2 제5조 제2항으로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삼자형 발행자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3항 중 ‘자가 발행형 전불식 증표’라고 있는 것은 ‘제삼자 발행형 전불식 증표’라고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3 제삼자형 발행자가 합병 이외의 사유에 의해 해산했을 때, 또는 제삼자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을 폐지했을 때는 해당 제삼자형 발행자의 제6조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변경의 신고)

제11조 제삼자형 발행자는 제 7 조 제 1 항 각 호에 기재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했을 때는 신고가 있던 사항을 제삼자형 발행자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4장 표시 사항 및 발행 보증금의 공탁 등

(전불식 증표의 표시 사항)

제12조 자가형 발행자 및 제삼자형 발행자(이하 ‘자가형 발행자 등’이라고 한다.) 는 그 발행하는 전불식 증표(자가형 발행자에 있어서는 신고 기한 후에 발행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① 이름, 상호 또는 명칭.
- ② 주소 또는 해당 전불식 증표의 발행과 관련되는 영업소 혹은 사무소의 소재지.
- ③ 해당 전불식 증표의 증표 금액 등.
- ④ 해당 전불식 증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기한이 설치되고 있는 경우는 해당 기간 또는 기한.
- ⑤ 그 외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발행 보증금의 공탁 등)

제13조 자가형 발행자등은 기준일에 그 발행한 전불식 증표의 기준일 미사용 잔고(다음 조 제 1 항의 권리의 실행의 수속이 종료한 날 이후의 기준일에 있어서는 동조 제 2 항의 공시와 관련되는 전불식 증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액. 이하 이 항 및 제 6 항에 대해 같다.)가 신고 기준액을 넘는 액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액을 넘을 때는 해당 기준일 미사용 잔고의 2분의 1 이상의 액수에 상당하는 액수의 발행 보증금을 해당 기준일의 다음날부터 2월 이내에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 근처의 공탁소에 공탁해야 한다.

2 전항의 선행 보증금에 대해 공탁을 해야 할 자가형 발행자 등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자가형 발행자 등을 위해서 필요한 발행 보증금이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따라 공탁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 신고했을 때는 해당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는 동안 해당 계약에 대해 공탁 되게 되어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 있

어서 ‘계약금액’이라고 한다.)에 대해, 동항의 발행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3 제 1 항의 발행 보증금에 대해 공탁(전항의 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 5 항 및 제 33 조 제 2 호에 대해 같다.)을 한 자가형 발행자 등은 기준일 마다 지체 없이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기준일과 관련되는 발행 보증금의 공탁에 대해 내각총리대신에 신고하여야 한다.
- 4 내각총리대신은 전불식 증표의 구입자 등의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제 2 항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형 발행자 등 또는 그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 계약금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탁해야 할 취지를 명할 수 있다.
- 5 제 1 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 보증금에 대한 공탁을 한 자가형 발행자등은 다음 조 제 1 항 권리 실행 수속의 종료 그 외의 사실의 발생에 의해 발행 보증금의 액수(계약금액을 포함한다. 다음 항에 대해 같다.)가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직전의 기준일에 있어서의 기준일 미사용 잔고(동조 제 1 항의 권리의 실행의 수속이 종료한 날의 직전의 기준일에 있어서는 동조 제 2 항의 공시와 관련되는 전불식 증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액)의 2 분의 1 에 상당하는 액수에 부족하게 되었을 때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부족액에 대해 공탁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 신고하여야 한다.
- 6 제 1 항 또는 전 2 항의 규정에 의해 공탁 한 발행 보증금은 기준일에 있어 기준일 미사용 잔고가 제 1 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액 이하가 되었을 때, 또는 기준일에 있어 발행 보증금의 액수가 기준일 미사용 잔고의 2 분의 1 에 상당하는 액수를 넘게 되었을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찾을 수 있다.
- 7 제 1 항 또는 제 5 항의 규정에 의해 공탁 하는 발행 보증금은 국채증권, 지방채 증권 그 외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사채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평성 13년 법률 제 75 호) 제 12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대체 사채 등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이것에 충당할 수 있다.
- 8 전 각 항에 규정하는 것의 외, 자가형 발행자 등의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에 수반하는 발행 보증금의 보관, 그 외 발행 보증금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내각부령·법무성령으로 정한다.

(발행 보증금의 환부)

제14조 전불식 증표의 소유자는 전불식 증표와 관련되는 채권에 관해, 해당 전불식 증표를 발행한 자가형 발행자 등과 관련되는 발행 보증금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앞서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권리의 실행의 제기가 있었을 경우에 해당 제기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해, 60일을 일정한 기간 내에 내각총리대신에 채권의 신청을 해야 할 것 및 그 기간 내에 채권의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해당 공시와 관련되는 발행 보증금에 대한 권리의 실행의 수속으로부터 제척되어야 할 일을 공시해야 한다.

3 전항에 규정하는 것의 외, 제 1 항의 권리의 실행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명의대여의 금지)

제15조 제삼자형 발행자는 자기의 명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제삼자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의 업무를 실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5장 감 독

(전불식 증표의 발행의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제16조 신고 자가형 발행자(제 5 조 제 3 항의 신고를 한 사람으로, 그 발행한 자가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기준일 미사용 잔고가 신고 기준액을 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제삼자형 발행자(다음 조 및 제18조에 있어서 ‘신고 자가형 발행자 등’이라고 한다.)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전불식 증표의 발행의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를 작성하고 이것을 보존해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

제17조 신고 자가형 발행자등은 기준일 마다, 해당 기준일의 다음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기재한 전불식 증표의 발행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 제출해야 한다.

- ① 해당 기준일을 포함한 기준 기간에 있어 발행한 전불식 증표의 발행액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산출한 액.

- ② 해당 기준일에 있어서의 기준일 미사용 잔고.
- ③ 그 외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전항의 보고서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입회검사 등)

제18조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신고 자가형 발행자 등에 대해, 그 업무 혹은 재산에 관계되어 참고가 되어야 할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또는 해당 직원에게 제삼자형 발행자의 영업소 혹은 사무소에 들어가 그 업무 혹은 재산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시키거나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시킬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입회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이것을 제시해야 한다.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인정된 것이라고 풀이해서는 안 된다.

(업무개선 명령)

제19조 내각총리대신은 제삼자형 발행자의 전불식 증표의 발행과 관련되는 업무의 운영에 관해, 전불식 증표의 구입자 등의 이익을 해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구입자 등의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해당 제삼자형 발행자에 대해, 해당 업무 방법의 변경 그 외 해당 업무의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을 명할 수 있다.

(등록의 취소 등)

제20조 내각총리대신은 제삼자형 발행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할 때는 제 6 조의 등록을 취소, 또는 6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제삼자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의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① 제 9 조 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 5 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② 부정의 수단에 의해 제 6 조의 등록을 받았을 때.
- ③ 이 법률 혹은 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 또는 이것들에 근거하는 처분에 위반했을 때.

2 내각총리대신은 제삼자형 발행자의 영업소 혹은 사무소의 소재지를 확지할 수 없을 때,

또는 제삼자형 발행자를 대표하는 임원의 소재를 확지할 수 없을 때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사실을 공고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해도 해당 제삼자형 발행자로부터 신청이 없을 때는 해당 제삼자형 발행자의 제 6 조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수속법(평성 5 년 법률 제 88 호) 제 3 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의 말소)

제 21 조 내각총리대신은 제 1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해 제 6 조의 등록이 그 효력을 잃었을 때, 또는 전조 제 1 항 혹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제 6 조의 등록을 취소했을 때는 해당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감독 처분의 공고)

제 22 조 내각총리대신은 제 20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했을 때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취지를 공고해야 한다.

제 6 장 전불식 증표 발행 협회

(전불식 증표 발행 협회)

제 23 조 자가형 발행자등은 전불식 증표의 구입자 등의 이익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전불식 증표의 발행과 관련되는 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명칭 중에 전불식 증표 발행 협회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하는 민법(메이지 29 년 법률 제 89 호)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전항에 규정하는 법인(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 대해 ‘협회’라고 한다.)은 회원의 명부를 공중이 마음대로 구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명칭의 사용 제한)

제 24 조 협회가 아닌 사람은 그 명칭 중에 전불식 증표 발행 협회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그 명칭 중에 전불식 증표 발행 협회 회원이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협회의 업무)

제25조 협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에 기재하는 업무를 실시한다.

- ① 전불식 증표의 발행과 관련되는 업무를 실시하는 것에 해당되어, 이 법률 그 외의 법령의 규정을 준수시키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 권고 그 외의 업무.
- ② 회원이 실시하는 전불식 증표의 발행과 관련되는 업무에 관해, 계약 내용의 적정화 그 외 전불식 증표의 구입자 등의 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 권고 그 외의 업무.
- ③ 회원이 실시하는 전불식 증표의 발행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한 전불식 증표의 구입자 등으로부터의 불평의 해결.
- ④ 전불식 증표의 구입자 등에 대한 홍보 그 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불평의 해결)

제26조 협회는 전불식 증표의 구입자 등으로부터 회원이 실시하는 전불식 증표의 발행과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불평에 대해 해결의 신청이 있을 때는 그 상담에 따라 신청인에 필요한 조언을 하고 그 불평과 관련되는 사정을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회원에 대해 그 불평의 내용을 통지해 그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 2 협회는 전항의 신청과 관련되는 불평의 해결에 대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회원에 대해, 문서 혹은 구두에 의한 설명을 요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회원은 협회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 4 협회는 제 1 항의 신청, 해당 불평과 관련되는 사정 및 그 해결의 결과에 대해 회원에 주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제7장 잡 칙

(등록의 취소 등에 수반하는 채무의 이행의 완료 등)

제27조 제삼자형 발행자에 대해서, 제10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해 제 6 조의 등록이 효력을 잃었을 때, 또는 제20조 제 1 항 혹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제 6 조의 등록이 삭제되었을 때는 해당 제삼자형 발행자인 사람 또는 그 일반 승계인은 해당 제삼자형 발행자가 발행

한 제삼자 발행형 전불식 증표와 관련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는 즉, 제삼자형 발행자로 간주한다.

(재무대신에 대한 자료 제출 등)

제27조의 2 재무 대신은 그 소장과 관련되는 금융 파탄 처리제도 및 금융 위기관리에 관해, 전불식 증표와 관련되는 제도의 기획 또는 입안을 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내각총리대신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재무 대신은 그 소장과 관련되는 금융 파탄 처리제도 및 금융 위기관리에 관해, 전불식 증표와 관련되는 제도의 기획 또는 입안을 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필요의 한도에 대해서 자가형 발행자 등 또는 협회에 대해, 자료의 제출, 설명 그 외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28조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에 의한 권한(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금융청 장관에 위임한다.

2 금융 청장관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전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재무국장 또는 재무 지국장에 위임할 수 있다.

(내각부령에의 위임)

제29조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의 외, 이 법률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내각부령으로 정한다.

(경과 조치)

제30조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명령을 제정, 또는 개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명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수반해 합리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범위 내에 있고,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31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것을 병과 한다.

1. 제 6 조의 등록을 받지 말고 제삼자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의 업무를 실시한 사람.
2. 부정의 수단에 의해 제 6 조의 등록을 받은 사람.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제삼자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의 업무를 실시하게 한 사람.

제32조 제2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의 업무의 정지의 명령에 위반하여 제삼자 발행형 전불식 증표의 발행의 업무를 실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것을 병과 한다.

제33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것을 병과 한다.

- ①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
- ② 제13조 제 1 항 또는 제 5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탁을 실시하지 않았던 사람.
- ③ 제13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공탁을 실시하지 않았던 사람.

제34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 7 조 제 1 항의 등록 신청서 또는 동조 제 2 항의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해 제출한 사람.
- ② 제10조 제 2 항에 대해 준용하는 제 5 조 제 2 항 또는 제1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
- ③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각 호에 게재하는 사항의 표시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의 표시를 해 전불식 증표를 발행한 사람.
- ④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서류의 작성 혹은 보존을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장부 서류의 작성을 한 사람.
- ⑤ 제17조 제 1 항의 보고서 혹은 동조 제 2 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보고서 혹은 서류를 제출한 사람.
- ⑥ 제1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하고 방해, 혹은 기피,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답변을 한 사람.
- ⑦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 ⑧ 제24조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명칭 중에 전불식 증표 발행 협회 회원이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한 사람 제35조 제 4 조 제 2 항 또는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법인(인격이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대해 같다.)의 대표자 혹은 관리인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 제31조로부터 전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 한다.

2 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대해 전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 행위에 대해 그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을 대표하는 것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 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차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0조 제2항에 대해 준용하는 제5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

②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제23조 제2항의 명부의 열람을 거절한 사람.

제38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① 제5조 제3항으로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3조 제3항 혹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

②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명칭 중에 전불식 증표 발행 협회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한 사람.

日本の『前拂式証券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第1章 總 則

(目的)

第1條 この法律は、前拂式証券の發行者に對して登録その他の必要な規制を行い、その發行等の業務の適正な運営を確保することにより、前拂式証券の購入者等の利益を保護するとともに、前拂式証券に係る信用の維持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定義) 第2條 この法律において「前拂式証券」とは、次に掲げる証券その他の物(乗車券、入場券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もの及びその發行の日から政令で定める一定の期間内に限り使用できるものを除く。)をいう。

1. 証券その他の物(以下この項において「証券等」という。)に記載され又は電磁的方法(電子的方法、磁氣的方法その他の人の知覺によって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法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より記録されている金額(金額を度その他の單位により換算して表示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場合の当該單位數を含む。以下この号及び第3項において同じ。)に應ずる對価を得て發行される証券等(電磁的方法により証券等に記録される金額に應ずる對価を得て当該金額の記録の加算が行われるものを含む。)であつて、当該証券等の發行者又は当該發行者が指定する者(次号において「發行者等」という。)から物品を購入し、若しくは借り受け、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場合に、これらの代価の弁済のために提示、交付その他の方法により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

2. 証券等に記載され又は電磁的方法により記録されている物品又は役務の數量に應ずる對価を得て發行される証券等(電磁的方法により証券等に記録される物品又は役務の數量に應ずる對価を得て当該數量の記録の加算が行われるものを含む。)であつて、發行者等に對して、提示、交付その他の方法により、当該物品の給付又は当該役務の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則】 第1條 · 第3條 2 この法律において「基準日未使用殘高」とは、前拂式証券の發行者が毎年3月31日及び9月30日(以下これらの日を「基準日」という。)までに發行したすべての前拂式証券の当該基準日における未使用殘高(次の各号に掲げる前拂式証券の區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金額をいう。)の合計額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出した額をいう。

1. 前項第1号の前拂式証券

当該基準日において代価の弁済に充てることができる金額

2. 前項第2号の前拂式証券

当該基準日において給付又は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物品又は役務の數量を内閣府令で

定めるところにより金銭に換算した金額 《改正》 平9法102

【則】 第2條

《改正》 平11法160

《改正》 平11法160 3 この法律において「証券金額等」とは、第1項第1号の前拂式証券にあってはその発行時において代価の弁済に充てることができる金額をいい、同項第2号の前拂式証券にあってはその発行時において給付又は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物品又は役務の數量をいう。4 この法律において「自家発行型前拂式証券」とは、前拂式証券の発行者（当該発行者と政令で定める密接な關係を有する者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から物品を購入し、若しくは借り受け、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場合に限り、これらの代価の弁済のために提示、交付その他の方法により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されている前拂式証券及び発行者に対してのみ、提示、交付その他の方法により、物品の給付又は役務の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されている前拂式証券をいう。5 この法律において「第三者発行型前拂式証券」とは、自家発行型前拂式証券以外の前拂式証券をいう。6 この法律において「自家型発行者」とは、自家発行型前拂式証券のみの発行者（その発行者から事業の全部を譲り受けた者及びその発行者の一般承継人を含み、その発行した自家発行型前拂式証券の基準日未使用残高があるものに限る。）である法人（人格のない社団又は財団で代表者又は管理人の定めのあるもの（以下「人格のない社団等」という。）を含む。）又は個人をいう。《改正》 平17法0877 この法律において「第三者型発行者」とは、第6條の登録を受けて第三者発行型前拂式証券の発行の業務を行う法人をいう。8 この法律において「基準期間」とは、基準日の翌日から次の基準日までの期間をいう。（適用除外）第3條 この法律は、次に掲げる前拂式証券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1. 國又は地方公共団体（次号において「國等」という。）が発行する前拂式証券
2. 法律により直接に設立された法人、特別の法律により特別の設立行為をもつて設立された法人又は特別の法律により地方公共団体が設立者となって設立された法人（これらの法人のうち、その資本金又は出資の額の全部が國等からの出資によるものその他の國等に準ずる法人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が発行する前拂式証券
3. 専ら発行者の従業員に対して発行される自家発行型前拂式証券（専ら当該従業員が使用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その他これに類す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前拂式証券
4. 割賦販賣法（昭和36年法律第159号）その他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前受金の保全のための措置が講じられている取引に係る前拂式証券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5. その使用者のために商行為となる取引においてのみ使用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前拂式証券（自家発行型前拂式証券の発行の届出）第4條 自家型発行者は、基準日においてその発行した自家発行型前拂式証券の基準日未使用残高がその発行を開始してから最初に政令で定める額（第13條第1項及び第16條において「届出基準額」という。）を超えることとなったと

きは、当該基準日の翌日から2月を経過する日（第12条において「届出期限」という。）までに、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を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自家発行型前拂式証券の発行を廃止した後再びその発行を開始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1. 氏名、商号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人格のない社団等を含む。）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又は管理人の氏名

2. 発行する自家発行型前拂式証券の証券金額等の種類

3. 当該基準日における基準日未使用残高

4.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則】第7条

《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改正》平11法160

《改正》平11法160 2 前項の届出をした自家型発行者（次条及び第16条において「届出自家型発行者」という。）は、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あっ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改正》平11法160（届出自家型発行者の地位の承継等）第5条 届出自家型発行者が自家発行型前拂式証券の発行に係る事業の全部を譲渡したとき、又は届出自家型発行者について合併、会社分割（当該自家発行型前拂式証券の発行に係る事業の全部を承継させるものに限る。）若しくは相續があったときは、当該事業の全部を譲り受けた者又は合併後存続する法人若しくは合併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会社分割により当該事業の全部を承継した法人若しくは相續人（相續人が2人以上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協議により当該自家発行型前拂式証券の発行に係る事業を承継すべき相續人を定めたときは、その者。以下同じ。）は、その届出自家型発行者の地位を承継する。《改正》平12法091

《改正》平17法087 2 前項の規定により届出自家型発行者の地位を承継した者は、遅滞なく、その旨を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則】第8条

《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改正》平11法160 3 届出自家型発行者は、自家発行型前拂式証券の発行を廃止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改正》平11法160 4 届出自家型発行者たる法人が合併以外の事由により解散したときは、その清算人（解散が破産手続開始の決定による場合にあつては、破産管財人）は、遅滞なく、その旨を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改正》平11法160

《改正》平16法076 5 届出自家型發行者たる人格のない社団等が消滅したときは、その代表者又は管理人であつた者は、遲滞なく、その旨を内閣總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平 9 法102

《改正》平11法160・最初・第 3 章 第三者型發行者の登録（登録）第 6 條 第三者發行型前拂式証券の發行の業務は、内閣總理大臣の登録を受けた法人でなければ、行ってはならない。【則】第 9 條・第11條の 3

《改正》平 9 法102

《改正》平10法131

《改正》平11法160（登録の申請）第 7 條 前條の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登録申請書を内閣總理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商号又は名称及び住所
2. 資本金又は出資の額
3. 役員の名氏又は名称及び住所
4. 發行する前拂式証券の証券金額等の種類
5.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則】第10條

《改正》平 9 法102

《改正》平10法131

《改正》平11法160

《改正》平11法160

《改正》平17法087 2 前項の登録申請書には、第 9 條第 1 項各号に該当しないことを誓約する書面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則】第11條

《改正》平 9 法102

《改正》平11法160

《改正》平11法160（登録の實施）第 8 條 内閣總理大臣は、第 6 條の登録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次條第 1 項の規定によりその登録を拒否する場合を除くほか、次に掲げる事項を第三者型發行者登録簿に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前條第 1 項各号に掲げる事項
2. 登録年月日及び登録番号《改正》平 9 法102

《改正》平10法131

《改正》平11法160 2 内閣總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登録をしたときは、遲滞なく、その旨を登録申請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平 9 法102

《改正》平10法131

【則】 第11條の2

《改正》平11法160 3 內閣總理大臣は、第三者型發行者登録簿を公衆の縦覽に供しなればならない。《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改正》平11法160 (登録の拒否) 第9條 內閣總理大臣は、登録申請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又は登録申請書若しくはその添付書類のうちに重要な事項について虚偽の記載があり、若しくは重要な事實の記載が欠けているときは、その登録を拒否しなればならない。

1. 法人でない者
2. 他の第三者型發行者が現に用いている商号若しくは名称と同一の商号若しくは名称又は他の第三者型發行者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商号若しくは名称を用いようとする法人
3. 第20條第1項の規定により第6條の登録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の日から3年を経過しない法人
4.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罰金の刑に處せられ、その刑の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3年を経過しない法人
5. 役員のうち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のある法人
 - イ 成年被後見人又は被保佐人
 - ロ 破産者で復権を得ないもの
 - ハ 禁錮以上の刑に處せられ、その刑の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3年を経過しない者
 - ニ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罰金の刑に處せられ、その刑の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3年を経過しない者
 - ホ 第三者型發行者が第20條第1項の規定により第6條の登録を取り消された場合において、その取消の日前30日以内に当該第三者型發行者の役員であった者で、当該取消の日から3年を経過しないもの
6. 第三者發行型前拂式証票の發行の業務を適確に遂行するに足る財産的基礎を有しない法人 《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改正》平11法151

《改正》平11法160 2 內閣總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拒否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理由を示して、その旨を登録申請者に通知しなればならない。《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則】 第11條の4

《改正》平11法160（第三者型發行者の地位の承継等）第10條 第三者型發行者が第三者發行型前拂式証票の發行に係る事業の全部を譲渡したとき、又は第三者型發行者について合併若しくは會社分割（当該第三者發行型前拂式証票の發行に係る事業の全部を承継させるものに限る。）があったときは、当該事業の全部を譲り受けた法人又は合併後存續する法人若しくは合併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若しくは會社分割により当該事業の全部を承継した法人は、その第三者型發行者の地位を承継する。ただし、当該事業の全部を譲り受けた法人又は合併後存續する法人若しくは合併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若しくは會社分割により当該事業の全部を承継した法人が前條第1項第2号から第5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改正》平12法091

《改正》平17法087 2 第5條第2項から第4項までの規定は、第三者型發行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條第3項中「自家發行型前拂式証票」とあるのは、「第三者發行型前拂式証票」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則】第13條 3 第三者型發行者が合併以外の事由により解散したとき、又は第三者發行型前拂式証票の發行を廢止したときは、当該第三者型發行者の第6條の登録は、その効力を失う。（変更の届出）第11條 第三者型發行者は、第7條第1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あったときは、遲滞なく、その旨を内閣總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則】第14條

《改正》平11法160 2 内閣總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受理したときは、届出があった事項を第三者型發行者登録簿に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章 表示事項及び發行保証金の供託等（前拂式証票の表示事項）第12條 自家型發行者及び第三者型發行者（以下「自家型發行者等」という。）は、その發行する前拂式証票（自家型發行者にあっては、届出期限後に發行するものに限る。）に、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氏名、商号又は名称
2. 住所又は当該前拂式証票の發行に係る營業所若しくは事務所の所在地
3. 当該前拂式証票の証票金額等
4. 当該前拂式証票を使用することのできる期間又は期限が設けられている場合は、当該期間又は期限
5.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改正》平9法102

【則】第15條

《改正》平11法160

《改正》平11法160（發行保証金の供託等）第13條 自家型發行者等は、基準日において、その發行した前拂式証票の基準日未使用殘高（次條第1項の権利の實行の手續が終了した日以

後の基準日にあつては、同條第2項の公示に係る前拂式証券がないものとみなして第2條第2項の規定により算出した額。以下この項及び第6項において同じ。)が届出基準額を超える額で政令で定める額を超えるときは、当該基準日未使用残高の2分の1以上の額に相当する額の發行保証金を当該基準日の翌日から2月以内に主たる營業所又は事務所の最寄りの供託所に供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2 前項の先行保証金につき供託をすべき自家型發行者等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自家型發行者等のために所要の發行保証金が内閣總理大臣の命令に応じて供託される旨の契約を締結し、その旨を内閣總理大臣に届け出たときは、当該契約の効力の存する間、当該契約において供託されることとなっている金額(以下この條において「契約金額」という。)につき、同項の發行保証金の全部又は一部の供託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則】第17條

《改正》平11法160 3 第1項の發行保証金につき供託(前項の契約の締結を含む。以下この項及び第5項並びに第33條第2号において同じ。)をした自家型發行者等は、基準日ごとに、遅滞なく、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基準日に係る發行保証金の供託につき、内閣總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則】第18條

《改正》平11法160

《改正》平11法160 4 内閣總理大臣は、前拂式証券の購入者等の利益の保護の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2項の契約を締結した自家型發行者等又はその契約の相手方に對し、契約金額に相当する金額の全部又は一部を供託すべき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則】第19條

《改正》平11法160 5 第1項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發行保証金につき供託をした自家型發行者等は、次條第1項の権利の實行の手續の終了その他の事實の發生により、發行保証金の額(契約金額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がその事實が發生した日の直前の基準日における基準日未使用残高(同條第1項の権利の實行の手續が終了した日の直前の基準日にあつては、同條第2項の公示に係る前拂式証券がないものとみなして第2條第2項の規定により算出した額)の2分の1に相当する額に不足することとなった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不足額について供託を行い、遅滞なく、その旨を内閣總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則】 第18條 · 第20條

《改正》 平11法160

《改正》 平11法160 6 第1項又は前2項の規定により供託した發行保証金は、基準日において基準日未使用残高が第1項の政令で定める額以下となったとき、又は基準日において發行保証金の額が基準日未使用残高の2分の1に相当する額を超えることとなった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る。7 第1項又は第5項の規定により供託する發行保証金は、國債証券、地方債証券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有価証券（社債等の振替に關する法律（平成13年法律第75号）第129條第1項に規定する振替社債等を含む。）をもってこれに充てることができる。《改正》 平9法102

【則】 第21條 · 第22條

《改正》 平11法160

《改正》 平11法160

《改正》 平14法065 8 前各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自家型發行者等の主たる營業所又は事務所の所在地の変更に伴う發行保証金の保管替えその他發行保証金に關し必要な事項は、内閣府令・法務省令で定める。《改正》 平9法102

《改正》 平11法160

《改正》 平11法160（發行保証金の還付） 第14條 前拂式証票の所有者は、前拂式証票に係る債權に關し、当該前拂式証票を發行した自家型發行者等に係る發行保証金について、他の債權者に先立ち弁済を受ける權利を有する。2 内閣總理大臣は、前項の權利の實行の申立て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申立てを理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權利を有する者に対し、60日を下らない一定の期間内に内閣總理大臣に債權の申出をすべきこと及びその期間内に債權の申出をしないときは当該公示に係る發行保証金についての權利の實行の手續から除外されるべきこと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平9法102

《改正》 平10法131

《改正》 平11法160 3 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第1項の權利の實行に關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名義貸しの禁止） 第15條 第三者型發行者は、自己の名義をもって、他人に第三者發行型前拂式証票の發行の業務を行わせてはならない。· 最初 · 第5章 監督（前拂式証票の發行の業務に關する帳簿書類） 第16條 届出自家型發行者（第5條第3項の届出をした者で、その發行した自家發行型前拂式証票の基準日未使用残高が届出基準額を超えるものを含む。）及び第三者型發行者（次條及び第18條において「届出自家型發行者等」という。）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前拂式証票の發行の業務に關する帳簿書類を作成し、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平9法102

【則】 第23條

《改正》 平11法160

《改正》平11法160（報告書の提出）第17條 届出自家型發行者等は、基準日ごとに、当該基準日の翌日から2月以内に、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前拂式証券の發行の業務に關する報告書を内閣總理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当該基準日を含む基準期間において發行した前拂式証券の發行額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出した額
2. 当該基準日における基準日未使用殘高
3.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則】第24條 · 第25條 · 第26條

《改正》平11法160

《改正》平11法160 2 前項の報告書には、内閣府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平9法102

《改正》平11法160

《改正》平11法160（立入検査等）第18條 内閣總理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届出自家型發行者等に對し、その業務若しくは財産に關し參考となるべき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命じ、又は当該職員に、第三者型發行者の營業所若しくは事務所に立ち入り、その業務若しくは財産の狀況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若しくは關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改正》平11法160 2 前項の規定により立入検査をする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關係者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3 第1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の權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してはならない。（業務改善命令）第19條 内閣總理大臣は、第三者型發行者の前拂式証券の發行に係る業務の運營に關し、前拂式証券の購入者等の利益を害する事實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購入者等の利益の保護のため必要な限度において、当該第三者型發行者に對し、当該業務の方法の変更その他当該業務の運營の改善に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改正》平11法160（登録の取消し等）第20條 内閣總理大臣は、第三者型發行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第6條の登録を取り消し、又は6月以内の期間を定めてその第三者發行型前拂式証券の發行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1. 第9條第1項第2号又は第5号に該当することとなつたとき。
2. 不正の手段により第6條の登録を受けたとき。
3. この法律若しく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又はこれらに基づく處分に違反したとき。《改

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改正》平11法160 2 内閣總理大臣は、第三者型發行者の營業所若しくは事務所の所在地を確知できないとき、又は第三者型發行者を代表する役員 of 所在地を確知できない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事實を公告し、その公告の日から30日を経過しても当該第三者型發行者から申出がないときは、当該第三者型發行者の第6條の登録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則】第28條

《改正》平11法160

《改正》平11法160 3 前項の規定による處分については、行政手續法（平成5年法律第88号）第3章の規定は、適用しない。

（登録の抹消）第21條 内閣總理大臣は、第10條第3項の規定により第6條の登録がその効力を失ったとき、又は前條第1項若しくは第2項の規定により第6條の登録を取り消したときは、当該登録を抹消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改正》平11法160（監督處分の公告）第22條 内閣總理大臣は、第20條第1項又は第2項の規定による處分をした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平9法102

《改正》平10法131

《改正》平11法160

《改正》平11法160・最初・第6章 前拂式証券發行協會（前拂式証券發行協會）第23條 自家型發行者等は、前拂式証券の購入者等の利益の保護を図るとともに、前拂式証券の發行に係る業務の健全な發展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その名称中に前拂式証券發行協會という文字を用いる民法（明治29年法律第89号）第34條の規定による法人を設立することができる。2 前項に規定する法人（以下この章及び次章において「協會」という。）は、會員の名簿を公衆の縦覽に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平9法102（名称の使用制限）第24條 協會でない者は、その名称中に前拂式証券發行協會という文字を用いてはならない。2 協會に加入していない者は、その名称中に前拂式証券發行協會會員という文字を用いてはならない。（協會の業務）第25條 協會は、そ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次に掲げる業務を行う。

1. 前拂式証券の發行に係る業務を行うに当たり、この法律その他の法令の規定を遵守させるための會員に對する指導、勸告その他の業務
2. 會員の行う前拂式証券の發行に係る業務に關し、契約の内容の適正化その他前拂式証券の購入者等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必要な指導、勸告その他の業務

3. 會員の行う前拂式証券の發行に係る業務に對する前拂式証券の購入者等からの苦情の解決

4. 前拂式証券の購入者等に對する廣報その他協會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必要な業務（苦情の解決）第26條 協會は、前拂式証券の購入者等から會員の行う前拂式証券の發行に係る業務に關する苦情について解決の申出があつたときは、その相談に応じ、申出人に必要な助言をし、その苦情に係る事情を調査するとともに、当該會員に對しその苦情の内容を通知してその迅速な處理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2 協會は、前項の申出に係る苦情の解決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會員に對し、文書若しくは口頭による説明を求め、又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3 會員は、協會から前項の規定による求めがあつたときは、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これを拒んではならない。4 協會は、第1項の申出、当該苦情に係る事情及びその解決の結果について會員に周知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7章 雜 則（登録の取消し等に伴う債務の履行の完了等）第27條 第三者型發行者について、第10條第3項の規定により第6條の登録が効力を失つたとき、又は第20條第1項若しくは第2項の規定により第6條の登録が取り消されたときは、当該第三者型發行者であつた者又はその一般承継人は、当該第三者型發行者が發行した第三者發行型前拂式証券に係る債務の履行を完了する目的の範囲内においては、なお第三者型發行者とみなす。（財務大臣への資料提出等）第27條の2 財務大臣は、その所掌に係る金融破綻處理制度及び金融危機管理に關し、前拂式証券に係る制度の企畫又は立案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内閣總理大臣に對し、必要な資料の提出及び説明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追加》平9法102

《改正》平10法131

《改正》平11法160

《改正》平11法160 2 財務大臣は、その所掌に係る金融破綻處理制度及び金融危機管理に關し、前拂式証券に係る制度の企畫又は立案を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て、自家型發行者等又は協會に對し、資料の提出、説明その他の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追加》平9法102

《改正》平11法160

《改正》平11法160（權限の委任）第28條 内閣總理大臣は、この法律による權限（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を金融廳長官に委任する。【則】第32條

《追加》平9法102

《改正》平10法131

《改正》平11法160

《改正》平11法160 《1項削除》平11法160 2 金融廳長官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項の規定により委任された權限の一部を財務局長又は財務支局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平10法131

《改正》平11法160

《改正》平11法160 《1項削除》平11法160 (内閣府令への委任) 第29條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を実施するため必要な事項は、内閣府令で定める。《改正》平9法102

《改正》平11法160

《改正》平11法160 (経過措置) 第30條 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命令を制定し、又は改廃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命令で、その制定又は改廃に伴い合理的に必要とされる範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措置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 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最初・
第8章 罰 則 第31條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3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300万円以下の罰金に處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1. 第6條の登録を受けないで第三者発行型前拂式証券の発行の業務を行った者
2. 不正の手段により第6條の登録を受けた者
3. 第15條の規定に違反して、他人に第三者発行型前拂式証券の発行の業務を行わせた者 第32條 第20條第1項の規定による発行の業務の停止の命令に違反して、第三者発行型前拂式証券の発行の業務を行った者は、1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100万円以下の罰金に處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第33條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6月以下の懲役若しくは50万円以下の罰金に處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1. 第4條第1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2. 第13條第1項又は第5項の規定に違反して、供託を行わなかった者
 3. 第13條第4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て、供託を行わなかった者 第34條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30万円以下の罰金に處する。
 1. 第7條第1項の登録申請書又は同條第2項の書類に虚偽の記載をして提出した者
 2. 第10條第2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5條第2項又は第11條第1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3. 第12條の規定に違反して、同條各号に掲げる事項の表示をせず、又は虚偽の表示をして前拂式証券を発行した者
 4. 第16條の規定による帳簿書類の作成若しくは保存をせず、又は虚偽の帳簿書類の作成をした者
 5. 第17條第1項の報告書若しくは同條第2項の書類を提出せず、又は虚偽の記載をした報告書若しくは書類を提出した者
 6. 第18條第1項の規定による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し、同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質問に對して答弁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答弁をした者
 7. 第19條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8. 第24條第2項の規定に違反して、その名称中に前拂式証票發行協會會員という文字を用いた者 第35條 第4條第2項又は第5條第2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は、20万円以下の罰金に處する。 第36條 法人（人格のない社団等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代表者若しくは管理人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關し、第31條から前條までの違反行爲をしたときは、その行爲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人に對しても、各本條の罰金刑を科する。2人格のない社団等について前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は、その代表者又は管理人がその訴訟行爲につきその人格のない社団等を代表するほか、法人を被告人又は被疑者とする場合の刑事訴訟に關する法律の規定を準用する。 第37條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50万円以下の過料に處する。

1. 第10條第2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5條第3項又は第4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2.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第23條第2項の名簿の縦覽を拒んだ者 第38條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10万円以下の過料に處する。

1. 第5條第3項から第5項まで又は第13條第3項若しくは第5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2. 第24條第1項の規定に違反して、その名称中に前拂式証票發行協會という文字を用いた者

〈첨부 3〉

구 『상품권법』

(폐지 1999.2.5, 법률 제574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권의 발행과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유통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자기발행형 상품권”이라 함은 상품권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3. “제3자발행형 상품권”이라 함은 당해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발행자와 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권면금액”이라 함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상품권소지자가 상품권발행자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발행일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상환”이라 함은 상품권발행자등이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것
2. 승차권등 예매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3. 공연장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등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4. 기타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그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조(상품권의 종류)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금액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2. 물품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3. 용역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제2장 상품권의 발행

제5조(자기발행형 상품권의 발행자)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자기발행형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6조(제3자발행형 상품권의 발행자) ① 제3자발행형 상품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만이 이를 발행할 수 있다.

1.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취소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었을 것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5. 기타 이미 인가를 받은 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 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
2. 자본금 또는 출자금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
4.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③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로서 공동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을 설립하거나, 제1항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발행의 등록) ①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류를 갖추어 주된 영업소 또는 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상호 및 주소
2. 발행하고자 하는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및 서식
3. 상품권의 발행예정금액
4.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4. 당해 시·도지사에게 이미 등록된 상품권발행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규모등에 비추어 발행예정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상품권발행자가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발행자의 지위승계) ① 자기발행형 상품권발행자가 그 상품권의 발행에 관련된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그 영업에 관하여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이 당해 상품권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없이 그 승계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3자발행형 상품권발행자가 그 상품권의 발행에 관련된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그 영업에 관하여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그 양수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상품권발행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제9조(상품권발행폐지의 신고등) ① 자기발행형 상품권발행자는 그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기발행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3자발행형 상품권발행자가 그 상품권의 발행을 폐지하거나 법인합병외의 사유로 해산된 때에는 당해 발행자(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인)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기재사항등) ① 상품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품권이라는 문자
2. 발행자의 성명 또는 상호
3. 발행자의 주소 또는 주된 영업소나 본사의 소재지
4. 권면금액 및 상환대상물의 내용
5. 상환장소
6. 발행년월일
7. 발행번호
8.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9. 발행자의 기명날인
10. 권리실행의 방법
11. 발행등록한 관서명
12.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금액상품권에는 금액을, 물품상품권에는 물품의 품질·규격·수량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그 가액을, 용역상품권에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그 가액을 기재함으로써 상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권면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행등록사실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상환보장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동항제5호·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상품권외의 별지 사용안내서에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권면의 기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①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에 제1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②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짧게 유효기간을 설정한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상품권발행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 또는 제공하겠다는 뜻을 상품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소지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바에 따라 현금·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권면금액의 제한)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구 상품권법) 37

제13조(상품권 발행의 제한) ① 재정경제원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물가의 안정 및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권상환대상물품 및 용역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권발행자에 대하여 상품권의 연간발행한도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권상환대상물품 및 용역 등을 제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권의 연간발행한도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발행보증금의 공탁) ① 상품권발행자는 그가 발행한 상품권중 매분기말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상품권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공탁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용상태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품권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권 발행전에 미리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상품권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이 상품권소지자의 권리실행의 완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공탁의무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부족한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상품권발행자의 신용상태의 악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상품권소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시점에서의 공탁금액총액이 상품권미상환액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상품권발행자의 주된 영업소 또는 본사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한 상품권발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⑦ 상품권발행자는 매분기말 현재의 공탁금액총액이 상품권미상환액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제15조(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은 유가증권으로 대신납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및 대신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금융기관등의 지급보증등) ① 상품권발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에 갈음하여 공탁의무액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이하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보증계약의 유효기간중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소지자의 권리실행의 완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액이 보증의무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공탁의무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공탁물의 반환승인) ① 상품권발행자가 공탁한 공탁물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상품권소지자의 권리 및 권리실행

제18조(상품권의 상환) ①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발행자등은 상품권소지자에 대하여 현금거래에 우선하여 당해 상품권에 표시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는 경우 그 상품권소지자가 당해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금액상품권의 상품권발행자등은 그 상품권소지자가 권면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우선변제의 보장) 상품권소지자는 그 상품권의 미상환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품권발행자가 공탁한 공탁물(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20조(권리실행의 신청과 재판) ① 상품권소지자는 그 상품권의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된 상품권발행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의무를 이행한 자인 경우에 그 발행자의 주된 영업소 또는 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제19조에 규정된 권리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는 상품권발행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 또는 상품권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는 재판의 효력은 상품권소지자 전원에게 미친다.

⑦ 신청인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확정의 고지를 받은 후에는 신청의 취하를 할 수 없다.

제21조(재판확정후의 절차) ①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의 공고로써 상품권소지자에 대하여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상품권에 대한 채권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뜻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법원이 하는 등기사항의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대하여 상품권발행에 관한 공부 기타 필요한 서류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액의 공탁) ① 법원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미상환된 상품권의 소지자에 대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배당표에 관한 진술과 배당실시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2주일전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상품권소지자 및 상품권발행자에게는 개인별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배당실시기일에 배당에 참여하지 아니한 상품권소지자의 채권과 배당실시기일 현재 이의가 진행중인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23조(환가 및 배당절차와 기간계산) ① 유가증권의 환가 및 배당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환가 및 배당을 하는 경우 알지 못하는 상품권소지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상품권소지자 또는 상품권 발행자가 제기하여야 할 소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592조의 기간은 그 상품권소지자를 안 때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24조(금융기관에 대한 권리실행) ① 상품권발행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에 갈음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법에 의한 권리실행을 하고자하는 상품권소지자는 당해 보증계약의 조건등에 따라 당해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권리실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실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5조(상품권의 목적외 사용금지) 상품권발행자등은 그 발행된 상품권을 하도급대금 또는

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명의대여의 금지) 제3자발행형 상품권발행자는 그 명의를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상품권발행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장부의 작성보존등) ① 상품권발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권발행등록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실적등의 보고) ① 상품권발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중 발행한 금액, 상환된 금액 및 매 분기말 현재의 미상환 루계액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자발행형 상품권발행자와 자기발행형 상품권의 직전 사업연도 발행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상품권발행자는 전년도의 상품권발행의 실적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상품권발행자는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사증명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 및 검사)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품권발행자등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상품권의 발행 또는 상환실태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업무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상품권소지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권발행자에 대하여 상품권발행에 관한 업무방법의 변경 기타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인가·등록의 취소 및 발행의 정지) ①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품권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품권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권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7조제2항 각호의

-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 또는 가액의 최고한도를 정한 경우에 당해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4.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이유없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8. 정당한 이유없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제출·보고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9. 정당한 이유없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3자발행형 상품권발행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인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그 인가의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제32조(청문)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권발행자의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의 감독) 재정경제원장관은 상품권소지자와 상품권발행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상품권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집행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권한의 위임)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발행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행한 상품권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발행된 상품권가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발행형 상품권을 발행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발행한 자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자로서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발행한 자
4.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권의 발행을 정지당한 자로서 당해 정지기간중에 상품권을 발행한 자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공탁등에 의한 발행보증금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발행보증금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발행한 자
2.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상품권상환대상물품 및 용역등의 제한 또는 상품권의 연간발행한도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등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
4.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자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상품권발행자등이 제11조제5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 또는 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상환 또는 환급의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상환 또는 환급의무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내지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후단,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사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행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제삼자발행형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발행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발행의 등록을 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정부의원 등 10인 (2004),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2004.12.23
- 구재균 (2005), “상품권의 법적문제”, 인권과정의, Vol.344, 2005.4, 대한변호사협회
-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4), 『상품권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법제현안 2004-4호, 2004.12, 국회사무처
- 권형택 (2006), 『상품권의 모든 것』, 2006.6.16, 도서출판 방동
- 박형준 의원실 (2005), 『아케이드게임장의 경품용상품권 건전화 방안』, 2005.10, 2005년 국정감사자료집 제4호
- 이코노미스트 (2002), “상품권시장 입체분석 (특집)”2002.8.13, pp. 16-21, 중앙일보
- 일본 금융청 홈페이지, <http://www.fsa.go.jp>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구 상품권법, 시행령, 시행규칙”, <http://www.mofe.go.kr>
- 주간동아 (2005), “복마전 상품권시장”2005.4.12, pp.16-28, 동아일보
- 한국법제연구원 (1993), 『상품권의 법적 규제』,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 1993.8,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상품권 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거래조사국 상품조사팀 조사보고서, 2004.8

국회의원 이계경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2006-2

우리나라 상품권의 발행·유통 현황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발행일 : 2006. 10. 12.

발행인 :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국회 정무위원회)

발행처 : 국회의원 이계경 비서실

비매품